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2,600,000	14,778,000
일반회계	425,000,000	12,750,000
특별회계	61,110,000	1,833,300
공기업특별회계	56,410,000	1,692,300
상수도사업	16,900,000	507,000
하수도사업	39,510,000	1,185,300
기타특별회계	4,700,000	141,000
수질개선	1,130,000	33,900
의료급여기금운영	1,357,000	40,710
새마을소득사업	700,000	21,000
주택관리사업	365,000	10,95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500,000	15,000
기반시설부담금	248,000	7,440
치수사업	400,000	12,000
기금	6,490,000	194,700
자활기금	751,055	22,532
육외광고정비기금	295,412	8,862
노인복지기금	548,252	16,448
식품진흥기금	182,340	5,470
재난관리기금	4,712,941	141,38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28,14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